

대 외 비 (사외비)

----- 목 차 -----

- 제 1조 목적
- 제 2조 적용범위
- 제 3조 권한
- 제 4조 구성
- 제 5조 위원장
- 제 6조 소집
- 제 7조 소집권자
- 제 8조 소집절차
- 제 9조 결의방법
- 제10조 부의사항
- 제11조 의무
- 제12조 의사록
- 제13조 규정의 제·개정
- 제14조 간사
- 제15조 부록

지속가능경영위원회운영규정

문서번호 : 021
개정번호 : 03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조 권한

위원회는 내부거래 보고 및 심의, 내부거래 세부현황 조사, 내부거래 시정조치 요구, ESG 관련 활동 보고 및 심의 및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제 4조 구성

1.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며, 위원 총수 3분의 2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제 5조 위원장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 6조 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7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조 소집절차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3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9조 결의방법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2.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속가능경영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부의사항

1.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1.1 계열회사와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청취 및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심의
 - 1.2 내부거래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 조사
 - 1.3 법령 및 회사규정에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조치 건의
2. ESG 관련 활동 보고 등 기타 비재무적 주요 경영 현안 심의

제11조 의무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1. 선관주의 의무 :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비밀유지 의무 :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3. 이사회 보고 의무 : 위원회는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의사록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 규정의 제·개정

1.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1.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2. 위원회 간사는 경영관리담당 팀장 또는 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부록

1. 시행일
 -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개정·시행한다.